#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입법 과제

재정경제팀 **정도영** 입법조사관

# 요 약

# ■ 국고보조금 개념 및 부정수급 현황

국고보조금 규모는 매년 확대되고 있으나 정부의 관리 효율성 저하, 보조사업자의 도덕적 해이 등으로 인한 부정수급 사례가 빈번하고 있음

## ■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종합대책

- 정부는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종합대책'을 통해 부정수급 원인별 추진 과제를 제시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관련 법령을 개정하였음
- 정부의 대책은 부정수급의 원인을 단계별로 구분하고 현실적 대안을 제시한 것으로 평가되나, 보조금관리위원회 및 적격성 심사제도의 법적 근거, 보조사업 평가제도 등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함

# ■ 입법 및 정책 과제

-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컨트롤타워로서 보조금관리위원회 설립에 관한 내용을 시행령에 마련하였으나 모법의 위임여부가 명확하지 않음
  - 동 위원회가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총괄 · 조정기구로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설립에 관한 법률적 근거가 마련되어야 할 것임
- 정부는 '16년부터 적격성 심사제도를 도입하는 등 사전적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으나, 동 제도는 법령상 근거 없이 시행되고 있음
  - 동 제도의 도입으로 사업 선정단계에서부터 효과적인 통제가 가능하게 되어 보조사업 수 확대를 방지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바, 이를 제도화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함
- 정부가 보조사업 평가제도 개선에 대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지 못하였다는 지적이 제 기되고 있음
  - 보조사업 평가와 예산의 연계 강화를 위하여 보조사업 평가 결과를 예산안에 반영한 내역을 예산안 첨부서류로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음

# 국고보조금 개념 및 부정수급 현황

- 국고보조금 제도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국가 외의 자가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국가가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위하여 재원을 교부하는 제도임<sup>1)</sup>
- 국고보조사업은 '16년 기준, 40개 부처, 1,789개 사업, 총 60.3조 원 규모로 운용되고 있음
  - 지자체 및 민간 보조사업은 각각 46,0조 원, 14,3조 원 규모임
  - 60.3조 원은 '16년 정부총지출 386.4조 원의 15.6% 수준으로, '15년 58.3조 원 대비 3.4% 증가하였음

### 〈표 1〉 국고보조금 규모

(단위 : 조 원, %, 건)

	2012	2013	2014	2015	2016
합 계	46.5( - )	49.2(5.8%)	52.5(6.9%)	58.3(11.0%)	60.3(3.4%)
지자체 보조	34,2	36.8	40.0	45.1	46,0
민간 보조	12,3	12,4	12,5	13,3	14,3
사업수	2,053	2,035	2,080	2,031	1,789

주 : ( )안은 증가율 자료 : 기획재정부

### 〈표 2〉 2016년 주요 부처별 국고보조금 현황

(단위 : 건, 억 원)

(127					(단위 · 전, 역 전)	
중앙관서명	지자체		민간		합계	
중앙단지당 -	사업수	금액	사업수	금액	사업수	금액
합 계	840	460,434	949	142,522	1,789	602,956
복지부	117	258,171	124	6,381	241	264,552
농림부	83	41,546	100	24,608	183	66,154
국토부	157	43,719	29	17,799	186	61,518
환경부	111	44,079	15	806	126	44,885
문체부	80	16,882	172	20,239	252	37,121
산자부	27	6,473	72	16,085	99	22,558
고용부	20	2,148	38	17,425	58	19,573
해수부	63	6,719	69	6,321	132	13,040
산림청	31	9,588	14	732	45	10,320
통일부	2	52	15	8,636	17	8,688

주 : 보조금 금액기준 상위 10개 부처

자료: 기획재정부

<sup>1)</sup> 보조금 이외에 부담금, 교부금, 조성비, 장려비, 위탁금 등의 명칭으로도 사용되고 있으며, 명칭은 개별 실정법상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음

# ■ 국고보조금 규모의 확대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관리 효율성 저하, 보조사업자의 도덕적 해이 등으로 인한 부정수급 사례에 대한 지적이 빈번하고 있음

- '14년 12월 대검찰청과 경찰청은 국고보조금 관련 비리를 집중 단속하여 '13년 12월 이후 총 5,552 명을 인지, 그 중 253명을 구속하고 부당하게 지급된 3,119억 원 상당의 국고보조금을 관리기관에 환수 조치하였음?'
  - 검·경 수사를 통해 보조금비리가 보건·복지, 고용, 농수축산, 연구·개발, 교통·에너지, 도시개발, 문화·체육·관광, 의료, 교육 등 보조금이 지급되는 거의 모든 분야에 걸쳐 만연하고 있음이 확인되었음
- 정부는 '14년 부처별로 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한 자체 실태점검<sup>3)</sup>을 통해 보조사업 선정 집행–사후관 리 등 단계별로 95개 사업에서 101건의 부정 수급사례를 적발하였음
  - 총 101건의 부정 수급사례 중 선정단계에서는 14건, 집행단계에서 73건, 사후관리단계에서 14건 등이 적발되었음

### 〈표 3〉 단계별 부정수급 사례

단계	2015	2016
선정 단계	• 지원대상 선정 부적정 • 선정기준 · 절차미흡 • 유사 · 중복사업선정	<ul> <li>쌀소득보전 직불사업의 직불금 지급시 부적합 지급 대상자 · 농지에 대하여 과오 지급</li> <li>임산물 산지종합유통센터사업의 지원 대상 선정기준 등이 미흡하여 시설기준이 미비하였음에도 보조사업자로 선정</li> <li>사업탈락을 우려하여 동일 사업을 '농업특별회계' 및 '지방특별회계' 예산에 중복 신청하여 '14년 예산에 모두 반영</li> </ul>
집행 단계	• 보조시설 목적외사용 • 집행내역 허위작성 • 명의대여	<ul> <li>사업운영관리 지침 미비로 인해 새마을운동 세계화사업의 보조사업 자가 국고보조금, 지자체 보조금 및 자체운영비를 혼용관리</li> <li>국가하천 유지보수사업 보조금을 지자체에서 목적 외로 사용하여 지방하천 관리비로 사용</li> <li>비영리민간단체 지원 사업에서 실제 설치하지 않은 지역사무소 설치 경비를 허위로 청구</li> <li>신재생에너지 보급 지원 사업에서 명의대여 등을 통해 제3자가 보조금을 수령</li> </ul>
사후 관리 단계	• 정산지연 및 허위영수증 • 보조금시설무단거래	<ul> <li>'05 ~'12년에 준공된 2,913개 하수처리시설사업 중 '13.10월까지 1,790건 정산 미완료</li> <li>보조금 지급 사업인 축산분뇨처리시설사업에서 해당 시설을 승인 없이 제3자에게 담보제공한 사례 발생</li> </ul>

자료 : 기획재정부

<sup>2)</sup> 대검찰청 보도자료, 「검  $\cdot$  경 국고보조금 비리 공조수사 중간 결과」,  $2014년\ 12월\ 3일$ 

<sup>3)</sup> 농업, 중소기업 등 비복지분야 보조금을 중심으로 18개 부처 1,771개 보조사업(26,6조 원)을 대상으로 실태(14,4~6월)를 점점하였음

# 2

#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종합대책

## 가. 추진 경과

- 정부는 국고보조금 개혁을 국정과제 및 '15년 24개 핵심개혁과제로 선정하여 중점 추진 중에 있음
  - 국고보조사업은 사업의 경직화, 도덕적 해이 등 운영상 문제점에 대한 시정 필요성이 제기됨
    - 부정수급은 재정운용의 비효율성 증가, 수급자 간 형평성 저해, 재정에 대한 국민신뢰 상실 등의 문제를 야기할 뿐 아니라 최근 국가채무 증가 등 재정여건의 악화로 부정수급에 대한 강력한 근절대책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음
- 정부는 국고보조금 부정수급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복지 분야 부정수급 대책 및 비복지 분야를 포함한 보조금 전반에 대한 부정수급 근절 대책을 마련하였음

### 〈표 4〉 복지 분야 및 비복지 분야 부정수급 근절 대책 추진 경과

복지 분야	비복지 분야
<ul> <li>'13,12월 '복지 부정수급 종합대책' 마련</li> <li>: 수급자 선정부터 사후관리까지 복지서비스 단계별 누수 유형에 따른 종합대책을 수립</li> <li>: 63개 과제별로 제도 개선 과제 제시</li> <li>'14,12월 '복지 부정수급 종합대책'에 대한 추진상황 점검 및 9개 과제 추가 제시</li> </ul>	<ul> <li>부처별로 보조사업별 자체 실태점검('14.4~6월)을 통한 제도개선방안 마련</li> <li>검·경 상시조사</li> <li>부패척결추진단(총리실)의 보조금 등 부정수급 합동조사 ('14.8월)</li> </ul>

자료 : 기획재정부

■ '14. 12월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과 각 부처의 교부결정 취소사유 분석, 관계부처 및 전문가 의견 수렴 과정 등을 거쳐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종합대책'을 수립하였음

## 나. 주요 내용

- 정부는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종합대책'에서 국고보조금의 투명성 · 효율성 강화를 통한 재정건전성 제고를 목표로 제시하고, 부정수급 방지 대책의 기본방향 3가지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음
  - 개별적 · 일시적 대응이 아닌 체계적 · 항구적 대응방안 추진
  - 보조금 정보공개 등 투명성 강화로 국민의 감시 · 참여 하에 추진
  - 부정수급에 대한 벌칙을 강화하여 엄중 처벌

### ■ 부정수급의 4대 주요 원인을 제시하고 각 원인별 개선방안을 제시하였음

- 부정수급 4대 주요 원인
  - 부정수급을 조사하고 대책을 수립할 '총괄·조정기구 및 인프라' 부재
  - 보조사업이 충분한 '타당성 검토, 중복성 검토' 없이 선정·집행
  - 보조금 전달체계의 핵심인 '보조사업자 감시·감독' 장치 미작동
  - 집행점검, 정산 등 '집행·사후관리 제도'의 형식적 운영

### 〈표 5〉 부정수급 주요 원인별 추진 과제

구분	주요 원인	추진 과제
1	부정수급을 조사하고 대책을 수립할 '총괄·조정기구 및 인프라' 부재	<ul> <li>컨트롤타워로서 '국고보조금관리위원회' 신설</li> <li>IT 인프라인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 구축</li> <li>보조금 부정수급 신고 인프라 구축</li> <li>보조사업 관리규정의 체계화 및 교육 강화</li> </ul>
2	보조사업이 충분한 '타당성 검토, 중복성 검토' 없이 선정 · 집행	<ul> <li>신규 보조사업에 대한 '적격성 심사제' 도입</li> <li>유사 · 중복 보조사업에 대한 통폐합 심사 강화</li> <li>3년 주기의 국고보조사업 '일몰제' 도입</li> <li>보조사업 평가제도 개선</li> </ul>
3	보조금 전달체계의 핵심인 '보조사업자 감시·감독' 장치 미작동	<ul> <li>부적격자 배제를 위한 보조사업자 선정제도 개선</li> <li>보조사업자에 대한 정보 공시 의무화</li> <li>일정규모 이상 보조사업자 외부회계감사 도입</li> <li>보조사업자 등의 부정수급에 대한 벌칙 강화</li> </ul>
4	집행점검, 정산 등 '집행·사후관리 제도'의 형식적 운영	<ul> <li>부처별 보조사업 집행점검 체계 구축 및 보고</li> <li>실시간모니터링체계 구축 등 투명성 · 효율성 강화</li> <li>보조사업 정산절차 개선</li> <li>부기등기 도입 등 사후관리 절차 강화</li> </ul>

자료 : 기획재정부

# ■ '15. 5월, 정부는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종합대책 추진현황 점검'을 통해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을 마련하는 등 추가 대책을 제시하였음<sup>4)</sup>

- 통합관리지침, 적격성심사기준, 보조사업 평가지침, 보조사업 정산보고서 작성 및 검증지침, 보조사업 자 정보공시 세부기준, 회계감사 세부기준 등 관계부처 의견 등을 반영하여 보조사업 운영관련 6개 지 침을 마련함
  - 지침은 각 부처에 통보하여 부처별 보조사업 운영에 반영토록 하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 이후, 기획재정부 훈령으로 시행함

-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의 업무재설계 및 정보화 전략계획 수립(BPR/ISP) 용역 결과와 '국가재정 전략회의' 결과 등을 반영하여 '열린재정<sup>5)</sup>'을 통해 보조금 관련 정보를 확대 공개하기로 하였음
  - 국민적 관심도가 높은 보조사업 위주로 관련 정보를 일목요연하게 통합하여 각 부처·기관 간 비교 공개가 가능하도록 함

## 다. 법령 개정

-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종합대책'에서 제시한 개선방안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을 개정함
  - '15. 8월 정부는 동 대책에서 제시한 추진과제를 반영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안번호: 1916567)」을 국회에 제출하였으며, '15. 12월 국회본회의에서 의결되었음

〈표 6〉「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주요 개정 내용

단계별 구분	주요 내용
사전적 관리 (선정ㆍ집행단계)	보조사업 존속기간 설정과 연장평가(제15조)     보조사업 존속기간 3년 초과 금지     보조사업 평가를 통한 존치 여부 결정      보조사업 관련 세부내용 공개(제26조의3)     보조사업 관련 정보 통합관리망에 공시     불성실 공시 사업자에 대한 정정공시, 보조금 삭감 등 근거 마련      보조금 취득 재산 소유권 등기 시 관련 내용을 부기등기(제35조의2)      회계감독 강화(제27조, 제27조의2)
	: 정산보고서 외부검증 의무화 : 10억 원 이상 보조사업자에 대한 회계감사
	<ul> <li>부정수급자 사업 배제(제31조의2, 제33조)</li> <li>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거나, 타용도 사용시 보조사업 수행대상에서 배제 및 보조금 환수 및 지급제한</li> <li>지원 제한 시 기획재정부장관 등에 통보</li> </ul>
사후적 제재 강화	• 제재부가금, 가산금 제도 도입(제33조의2) : 부정수급금 5배 이내 제재부가금 부과 : 기한 내 미납시 최대 5%의 가산금 징수
	• <b>부정수급 관련자 등의 명단공표(제36조의2)</b> : 부정수급자, 위반내용 등을 공표
	• 보조금 취득재산 무단처분 처벌(41조) : 승인 없이 중요재산 담보제공시 형사처벌

자료: 기획재정부

<sup>5) &#</sup>x27;재정정보 통합공개시스템'으로 동 시스템을 활용하여 부처별 보조금 예산내역 및 보조금 실적보고서 등을 공개('14년 말 구축, '15.7월부터 공식 서비스 개시)

- '15. 7월, 보조금 개혁을 지원하기 위하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을 통해 부정수급을 조사하고 대책을 수립할 컨트롤타워 기능을 수행할 '보조금관리위원회'의 설립 근거를 마련함
  - 동 시행령 제6조의3(보조금관리위원회)에 따른 보조금관리위원회는 보조금 예산의 편성 · 집행 · 관리 등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함

### 〈표 7〉 보조금관리위원회

	위원장	기획재정부 제2차관		
구성	위원 (임기: 3년)			
주요 업무	<ul> <li>보조사업과 관련된 주요정책의 결정과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li> <li>보조사업 및 보조사업자 선정 등의 타당성 확인에 관한 사항</li> <li>보조금의 중복 또는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의 수립 · 운영과 보조사업의 정비에 관한 사항</li> <li>보조금통합관리망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li> <li>그 밖에 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에 부치는 사항</li> </ul>			

자료: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 3(보조금관리위원회)

# 입법 및 정책 과제

- 정부의 국고보조금 개혁은 현 정부 출범 이후 일관된 의지를 가지고 단계적 · 효과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됨
  - 실태조사 및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국고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한 객관적인 원인을 제시하고, 각 원인별로 현실적인 대안이 제시되었으며, 다음과 같은 효과가 기대됨
    - 보조사업 일몰제 도입 및 보조사업 통합관리시스템 구축<sup>®</sup> 등으로 보조금 집행의 효율성 및 투명성 제고
    - 부정수급의 주요 원인에 대한 맞춤형 대응으로 향후 효과적인 국고보조금 관리 가능
    - 부정수급자에 대한 제재 강화로 보조사업자들의 도덕적 해이에 따른 부작용 최소화
  - 정부가 제시한 부정수급 원인별 추진과제가 법령 개정 및 후속조치를 통해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반영되는 등 각 과제별 이행 과정이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됨
- 정부의 효과적인 대책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사안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보완이 필요함

- 보조금 관리의 컨트롤타워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3에 의거 하여 설립된 보조금관리위원회에 대해 모법의 위임여부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고 있음
- 정부의 대책은 사후관리단계의 비중이 높은 반면, 선정단계에서의 대책은 상대적으로 비중이 낮은 것으로 평가됨에 따라 선정단계에서 보조사업 관리를 강화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요구됨
- 정부가 제시한 부정수급 원인별 과제 중 평가제도 개선에 대한 대책이 구체화되지 못한바, 이에 대한 보완이 요구됨

### 가. 보조금관리위원회의 법률적 근거 마련

- 정부는 부정수급 주요 원인별 추진 과제에서 컨트롤타워로서 보조금관리위원회를 신설하였으나, 동 위 원회에 대한 명확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지 못하고 있음
  - 정부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3(보조금관리위원회)을 신설하여 동 위원회 설립에 대한 규정을 마련한 바 있음
    - 그러나 동 조항의 경우 모법인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위임 근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 '15, 12월 모법인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제26조의 2(보조사업 관리체계의 개선) 에 기획 재정부장관으로 하여금 보조사업 및 보조사업자의 선정, 보조사업의 집행 및 사후관리 등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는 조항이 신설되었음
    - 그러나 동 조항을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3(보조금관리위원회)의 근거 조항으로 보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는 것으로 보임
  - 일례로 보조사업평가단의 경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15조제2항에 근거를 마련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2에 동 사업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바, 보조금관리위원회도 이를 참조할 필요가 있음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 제15조(보조사업의 존속기간과 연장평가)

- ①  $\sim$  ② (생략)
-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평가를 실시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사업평가단을 구 성· 운영할 수 있다.
- ④ (생략)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6조의2(보조사업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법 제15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보조사업평가위 원을 선정하여 보조사업평가단을 구성 · 운영할 수 있다. 1. ~ 4. (생략)

<sup>7) 「</sup>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의2(보조사업 관리체계의 개선) ① 기획재정부장관 및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고 보조금의 중복 수급이나 부정 수급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조금통합관리망을 구축하여야 하고, 보조사업 및 보조사업자의 선정, 보조사업의 집행 및 사후관리 등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② (생략)

- 보조금관리위원회가 정상적으로 보조사업 관리의 컨트롤타워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동 위원회 설립에 대한 법률적 근거 규정이 필요함
  - 정부가 부정수급 종합대책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보조금관리위원회가 부정수급을 조사하고 대책을 수립할 총괄·조정기구로서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동 위원회 설립의 법률적 근거에 대한 논의가 선행되어야 할 것임

### 나, 적격성 심사제도의 실효성 강화

■ 정부는 '16년부터 적격성 심사제도를 도입하는 등 보조사업의 사전적 관리 수단을 강화하고 있으나, 동 제도에 대한 법령상 근거를 마련하지 못하고 있음

### 〈표 8〉 보조사업의 적격성 심사제도

목적	신규보조사업의 적격성에 대한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사전 조사를 통해 보조사업 추진여부의 타당성을 사전에 투명하고 공정하게 결정
대상	100억 원 이상 신규 보조시업 : 사업기간의 정함이 없이 계속 추진되는 보조사업은 5년간의 사업비 합계를 기준으로 적격성 심사 대상 여부 판단
평가 기준	사업의 타당성, 관리의 적정성, 규모의 적정성 등에 5:3:2의 가중치를 부여하여 평가 : 보조사업의 성격(자본보조, 경상보조), 보조금 교부대상(민간보조, 자치단체보조) 등에 따라 평가가중치를 조정한 모델을 중앙관서장이 선택할 수 있음
반영	세부항목별 점수를 합산하여 85점 이상인 경우에만 사업 적격성을 인정 : 합산점수가 85점 이상이어도 보조금 지원방식의 적정성 여부(융자방식 등 대안검토)에서 0점을 받거나 타 사업과의 중복성이 명백하게 의심되는 경우에는 부적격한 것으로 판정
면제 대상	「국가재정법」 제7조제2항제4호의2에 따른 의무지출사업 「국가재정법」 제38조에 따른 대규모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지방재정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타당성조사 대상사업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자료 : 송헌재, 「국고보조사업 적격성 평가 적용방안」, 「국고보조사업의 책무성 제고를 통한 재정건전성 확보」, 한국행정연구원 재정예산 학술세미나, 2016, 3, 25,에서 재구성.

- 보조사업은 일단 시행되면 '보조사업자의 기득권'으로 인식되어 축소 · 폐지가 어려웠으나, 적격성 심사제도의 도입으로 보조사업 선정단계에서부터 효과적인 통제가 가능하게 되어 보조사업의 수가 확대되는 것을 방지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음
- 정부는 동 제도에 대한 법령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15. 5월, 보조사업자가 제출하는 사업계획서에 당해 사업의 적격성 심사를 반영한 결과를 첨부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기획재정부 공고 제2015-92호)한 바 있으나, 개정에 이르지는 못하였음®

<sup>8)</sup>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는 적격성 심사제도 도입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일정 기간 시범적으로 시행한 후 입법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제시하였음

- 선정단계에서 보조사업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적격성 심사제도에 대한 법령상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제도화하는 입법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함
  - 법령상 근거 없이 적격성 심사가 진행될 경우 동 제도 도입에 따른 기대효과가 반감될 우려가 있음
  - 적격성 심사의 법령상 근거 마련과 더불어 적격성 심사 대상 사업의 경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중앙관서의 장의 보조금 예산 요구)에 중앙관서의 장이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는 첨부서류에 포함되도록 규정하여 동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방안에 대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음
    - 이러한 논의는 보조사업의 예산 편성 과정에 적격성 심사 결과를 반영하도록 하는 것으로, 적격성 심사제도 도입의 효과를 극대화할 것으로 기대됨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중앙관서의 장의 보조금 예산 요구)

① ~ ② (생략)

③ 중앙관서의 장이 보조금 예산을 요구할 때 기획재정부장관이 관계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한 보조사업에 대하여는 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의 예산 계상 신청내용과 중앙관서의 장의 조정내용 및 그 밖에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다. 보조사업 평가와 예산의 연계 강화

- 정부는 부정수급 주요 원인별 추진 과제에서 보조금 평가제도를 개선하기로 하였으나 평가제도 개선에 대한 추가적인 제도적 장치는 마련하지 못하였음
  - 현행「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15조제3항은 보조사업에 대한 평가결과를 예산안과 함께 국회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평가 결과에 대한 반영여부는 규정하지 않고 있는바, 이에 대한 보완이 요구되고 있음
    - 정부가 보조사업의 평가결과를 적극적으로 예산 편성 과정에 반영하지 않는다면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평가제도가 형식적으로 운영될 우려가 있음
      - 2015년 보조사업 평가 결과, 즉시 폐지 등 사업 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수가 전체조사 대상 사업 1,422개 중 688개 사업으로 조사되고 있음
      - 평가 결과 상당수의 사업이 조정이 불가피한 것으로 평가되었으나 사업조정 없이 연례적으로 예 산이 편성됨으로써 보조사업 평가제도의 실효성이 저하됨

〈표 9〉「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주요 개정 내용

	파서거리	사업 수		'15년 예산	
판정결과		사업수(개)	비율(%)	예산(억 원)	비율(%)
-	정상 추진	734	51.6	328,143	66.8
	일몰예정 사업	149	10.5	30,942	6.3
-	즉시 폐지	65	4.6	1,213	0.2
-	단계적 폐지	75	5.3	2,833	0.6
-	단계적 감축	275	19.3	67,091	13.7
	통폐합	71	5.0	13,337	2,7
-	사업방식 변경	202	14.2	78,763	16.0
	합 계	1,422	100.0	491,380	100.0

자료: 기획재정부

- 국회예산정책처의 「2016년도 정부 성과계획 평가」에에서도 보조사업에 대한 평가 결과 사업조정 대상 사업임에도 예산이 편성된 사업의 사례로 다음과 같이 지적한 바 있음
  - '14년 보조사업 운용평가 결과 통폐합 판정을 받은 26개 사업 중 3개 사업이 '16년 예산안에서도 별도의 사업예산으로 편성됨
  - 즉시폐지 판정을 받았음에도 계속 예산이 편성됨
  - 단계적 감축 판정을 받은 121개 사업 중 36개 사업의 예산이 감축되지 않거나, 감축 규모 측면에서 도 평가 결과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음

# ■ 평가결과에 대한 구속력을 강화하는 제도적 장치로 평가결과를 예산안에 반영한 현황을 예산안과 함께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음

- 보조사업 운용평가 결과의 구속력을 강화하는 내용을 포함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우의 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1916797)」이 제19대 국회에 제안되었으나, '16년 4월 현재 기획재정위원회 에 계류 중임
  - ─ 동 개정안은 국회에 제출하는 예산안에 보조사업에 대한 평가 결과의 예산안 반영 내역을 첨부하도
     록 함으로써 예산 편성과정에서의 보조사업 평가 결과에 대한 구속력을 강화하려는 것임
- 이에 대해 정부는 내역사업으로 관리되는 보조사업의 특성, 자료작성 및 검증기간 등을 고려할 때 예산안과 함께 국회에 제출하는 것은 현실적인 어려움이 존재하며, '17년 구축 예정인 보조사업 통합관리시스템과 연계하여 검토한다는 입장임